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47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 안규백·장종태·박홍배

조 국 · 조인철 · 이개호

추미애 • 이광희 • 박범계

정성호 · 안태준 · 김준혁

이재관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현역병 복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

그런데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게 하는 것은 병역기피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현역병 복무를 면하게 하여 병역기피자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되는 수형자에서 병역기 피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 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 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여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한 일반 수형자는 기존과 같이 현역병 복무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 1항제2호 단서 신설 및 제9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2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와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 |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
| 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 |
|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 |
|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 | |
| 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 | |
|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 |
| 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 | |
| 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 | |
| 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 |
|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 |
|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 | |
| 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 | 2 |
| 령으로 정하는 <u>사람</u> <u><단서</u> | <u>사람.</u> <u>다만,</u> |
| <u>신설></u> |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 |
| | 제1항 본문, 제88조의2 및 제 |
| | 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 |
| | 람은 제외한다.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제94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 |
| |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 |

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 (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 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 고하여야 한다.